

# 대학원생인권보호센터 운영 내규

제정 2017. 3. 1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한림대학교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며,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인권 침해를 당할 경우 구제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림대학교 공동체를 올바르게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내규에서 “대학원생”이라 함은 한림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을 말하며 “인권침해”란 권리장전에 명시된 “대학원생의권리”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며,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권침해로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대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대학원생으로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적용된다.

**제4조(비밀유지)** 인권침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**제5조(기구)** 이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대학원생의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“대학원생인권보호센터” 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6조(업무)**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대학원생 인권침해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
2. 대학원생 인권침해 피해자의 보호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
3. 대학원생 인권침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
4. 기타 대학원생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**제7조(구성 및 역할)**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센터의 행정업무는 대학원 교학팀에서 담당한다.

**제8조(대학원생인권위원회)** ① 인권침해 신고사실이 접수되면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심의에 적합한 위원회를 구성하되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5인 내외로 구성하되,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9조(신고 및 접수)** 인권침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별지서식에 작성하여 대학원생인권보호센터에 접수하며, 센터장은 사건 접수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**제10조(보고 및 조치)** 센터장은 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이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인권침해 피해사실 신고서

피해자 (본인)	성 명			소속(학과)	
	학 번			전화번호	
피신청자 (상대방)	행위자	성 명		소 속	
		직 위		전화번호	
사건명					
■ 피해사실 내용 (원인사실 및 신청이유, 결론적 요구사항 등)					
■ 참고사항(증빙 또는 근거)					
년    월    일					
신고인			(서명 또는 인)		
대학원생인권보호센터장 귀하					

※ 작성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기록 가능함.